

국토해양부 고시 제 5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란 다음에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 기계명	특수건설 기계 (도로보 수트럭)	특수건설 기계 (노면파 쇄기)	특수건설 기계 (노면측 정장비)	특수건설 기계 (콘크리 트믹서트 레일러)	특수건설 기계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특수건설 기계 (수목이 식기)	특수건설 기계 (터널용고 소작업차)
공통 사항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